EFETE 경희궁 에피트 입주자 모집공고

※견본주택에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4.11.13. 이전부터 계속 거주)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10년	3년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 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해당지역	기타지역				
일정	2026.11.13.(금)	2026.11.25.(수)	2026.11.26.(목)	2026.11.27.(금)	2026.11.30.(월)	2026.12.04.(금)	2026.12.9.(수) ~ 2026.12.13.(일)	2026.12.16.(수) ~ 2026.12.18.(금)

1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해당지역	기타지역				
일정	2026.11.25.(수)	2026.11.26.(목)	2026.11.27.(금)	2026.11.30.(월)	2026.12.04.(금)	2026.12.9.(수) ~ 2026.12.13.(일)	2026.12.16.(수) ~ 2026.12.18.(금)
방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223-6)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2 공급대상 및 공급금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개발과- 17144호(2026.11.1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남동 28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6층, 지상 21층 3개동 총 228세대(토지등소유자 10세대, 보류지 5세대, 임대 78세대, 기타 1세대 포함) 중 일반분양 134세대
[특별공급 72세대(기관추천 13세대, 다자녀가구 13세대, 신혼부부 20세대, 노부모부양 4세대, 생애최초 9세대, 신생아 13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30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타입)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 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 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전용 면적	주거공용 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신생아	계		
2026000505	01	039.9342	39	39.9342	14.3019	54.2361	31.9086	86.1447	7.0882	5	-	-	-	-	-	-	-	5	-
	02	059.9926	59	59.9926	18.3791	78.3717	47.9359	126.3076	10.6485	31	5	3	5	1	1	3	18	13	-
	03	084.9794A	84A	84.9794	26.3776	111.3570	67.9011	179.2581	15.0836	53	4	5	8	2	4	5	28	25	4
	04	084.9940B	84B	84.9940	25.9944	110.9884	67.9128	178.9012	15.0862	45	4	5	7	1	4	5	26	19	-
	합 계									134	13	13	20	4	9	13	72	62	4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	039.9342	059.9926	084.9794A	084.9940B
견본주택 등 약식 표기	39	59	84A	84B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에는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약식 표기 (타입)	공급 세대수	동호 구분	층 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시	계약 후 15일 이내	2027.05.10.	2027.12.10.	2028.07.10.	2029.04.10.	2029.09.10.	2030.02.11.	입주지정일
039.9342	39	5	102동 6호	6-10층	1	686,654,804	471,865,196	1,158,520,000	50,000,000	65,852,000	115,852,000	115,852,000	115,852,000	115,852,000	115,852,000	115,852,000	347,556,000
				11-15층	3	693,731,642	476,728,358	1,170,460,000	50,000,000	67,046,000	117,046,000	117,046,000	117,046,000	117,046,000	117,046,000	117,046,000	351,138,000
				16-21층	1	700,814,407	481,595,593	1,182,410,000	50,000,000	68,241,000	118,241,000	118,241,000	118,241,000	118,241,000	118,241,000	118,241,000	354,723,000
059.9926	59	31	101동 3호	4층	2	1,084,285,380	745,114,620	1,829,400,000	50,000,000	132,940,000	182,940,000	182,940,000	182,940,000	182,940,000	182,940,000	182,940,000	548,820,000
				5층	1	1,094,515,382	752,144,618	1,846,660,000	50,000,000	134,666,000	184,666,000	184,666,000	184,666,000	184,666,000	184,666,000	184,666,000	553,998,000
			102동 3호	6-10층	5	1,104,745,384	759,174,616	1,863,920,000	50,000,000	136,392,000	186,392,000	186,392,000	186,392,000	186,392,000	186,392,000	186,392,000	559,176,000
				11-15층	7	1,114,975,386	766,204,614	1,881,180,000	50,000,000	138,118,000	188,118,000	188,118,000	188,118,000	188,118,000	188,118,000	188,118,000	564,354,000
				16-21층	7	1,125,199,461	773,230,539	1,898,430,000	50,000,000	139,843,000	189,843,000	189,843,000	189,843,000	189,843,000	189,843,000	189,843,000	569,529,000
			101동 6호	6-10층	2	1,074,055,378	738,084,622	1,812,140,000	50,000,000	131,214,000	181,214,000	181,214,000	181,214,000	181,214,000	181,214,000	181,214,000	543,642,000
				11-15층	4	1,084,285,380	745,114,620	1,829,400,000	50,000,000	132,940,000	182,940,000	182,940,000	182,940,000	182,940,000	182,940,000	182,940,000	548,820,000
				16-21층	3	1,094,515,382	752,144,618	1,846,660,000	50,000,000	134,666,000	184,666,000	184,666,000	184,666,000	184,666,000	184,666,000	184,666,000	553,998,000
084.9794A	84A	53	101동 4호	3층	2	1,453,436,721	998,793,279	2,452,230,000	50,000,000	195,223,000	245,223,000	245,223,000	245,223,000	245,223,000	245,223,000	245,223,000	735,669,000
				4층	1	1,467,969,725	1,008,780,275	2,476,750,000	50,000,000	197,675,000	247,675,000	247,675,000	247,675,000	247,675,000	247,675,000	247,675,000	743,025,000
				5층	1	1,482,508,656	1,018,771,344	2,501,280,000	50,000,000	200,128,000	250,128,000	250,128,000	250,128,000	250,128,000	250,128,000	250,128,000	750,384,000
			102동 4호	6-10층	7	1,497,041,660	1,028,758,340	2,525,800,000	50,000,000	202,580,000	252,580,000	252,580,000	252,580,000	252,580,000	252,580,000	252,580,000	757,740,000
				11-15층	6	1,511,574,664	1,038,745,336	2,550,320,000	50,000,000	205,032,000	255,032,000	255,032,000	255,032,000	255,032,000	255,032,000	255,032,000	765,096,000
				16-21층	7	1,526,107,668	1,048,732,332	2,574,840,000	50,000,000	207,484,000	257,484,000	257,484,000	257,484,000	257,484,000	257,484,000	257,484,000	772,452,000
			101동 5호	3층	2	1,409,831,782	968,828,218	2,378,660,000	50,000,000	187,866,000	237,866,000	237,866,000	237,866,000	237,866,000	237,866,000	237,866,000	713,598,000
				4층	2	1,424,370,713	978,819,287	2,403,190,000	50,000,000	190,319,000	240,319,000	240,319,000	240,319,000	240,319,000	240,319,000	240,319,000	720,957,000
				5층	2	1,438,903,717	988,806,283	2,427,710,000	50,000,000	192,771,000	242,771,000	242,771,000	242,771,000	242,771,000	242,771,000	242,771,000	728,313,000
			102동 5호	6-10층	7	1,453,436,721	998,793,279	2,452,230,000	50,000,000	195,223,000	245,223,000	245,223,000	245,223,000	245,223,000	245,223,000	245,223,000	735,669,000
				11-15층	7	1,467,969,725	1,008,780,275	2,476,750,000	50,000,000	197,675,000	247,675,000	247,675,000	247,675,000	247,675,000	247,675,000	247,675,000	743,025,000
				16-21층	9	1,482,508,656	1,018,771,344	2,501,280,000	50,000,000	200,128,000	250,128,000	250,128,000	250,128,000	250,128,000	250,128,000	250,128,000	750,384,000
084.9940B	84B	45	101동 2호	4층	2	1,434,138,409	985,531,591	2,419,670,000	50,000,000	191,967,000	241,967,000	241,967,000	241,967,000	241,967,000	241,967,000	241,967,000	725,901,000
				5층	2	1,448,623,997	995,486,003	2,444,110,000	50,000,000	194,411,000	244,411,000	244,411,000	244,411,000	244,411,000	244,411,000	244,411,000	733,233,000
			102동 2호	6-10층	5	1,463,115,512	1,005,444,488	2,468,560,000	50,000,000	196,856,000	246,856,000	246,856,000	246,856,000	246,856,000	246,856,000	246,856,000	740,568,000
				11-15층	7	1,477,601,100	1,015,398,900	2,493,000,000	50,000,000	199,300,000	249,300,000	249,300,000	249,300,000	249,300,000	249,300,000	249,300,000	747,900,000
				16-21층	9	1,492,086,688	1,025,353,312	2,517,440,000	50,000,000	201,744,000	251,744,000	251,744,000	251,744,000	251,744,000	251,744,000	251,744,000	755,232,000
			101동 1호	4층	1	1,390,681,645	955,668,355	2,346,350,000	50,000,000	184,635,000	234,635,000	234,635,000	234,635,000	234,635,000	234,635,000	234,635,000	703,905,000
				6-10층	7	1,419,652,821	975,577,179	2,395,230,000	50,000,000	189,523,000	239,523,000	239,523,000	239,523,000	239,523,000	239,523,000	239,523,000	718,569,000
			102동 1호	11-15층	6	1,434,138,409	985,531,591	2,419,670,000	50,000,000	191,967,000	241,967,000	241,967,000	241,967,000	241,967,000	241,967,000	241,967,000	725,901,000
				16-21층	6	1,448,623,997	995,486,003	2,444,110,000	50,000,000	194,411,000	244,411,000	244,411,000	244,411,000	244,411,000	244,411,000	244,411,000	733,233,000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우리은행	1005-304-916582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특별공급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 신생아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 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 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4 일반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1순위 신청가능 - 세대주일 것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규제지역 1순위 청약 불가)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 40% /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70% / 3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① 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② 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0명 / 5 / 4명 / 25 1명 / 10 / 5명 / 30 2명 / 15 / 6명 이상 / 35 3명 /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본인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7년 이상 ~ 8년 미만 / 9 배우자 /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 0 / 1년 이상 ~ 2년 미만 / 2 1년 미만 / 1 / 2년 이상 /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 점수 1년 미만 / 6개월 미만 /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2년 이상 / 1년 이상 /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 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 내 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①